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41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송언석 · 김상훈 · 이성권

박준태 • 구자근 • 박수영

이종욱 • 이인선 • 백종헌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 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주된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기존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이 있어 사실상 담배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및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 등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유사담배의 판매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함으로써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 호, 제30조제1항). 법률 제 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을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u> 을	1연초(煙草), 니코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	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화학물질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	
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죄에 관련된 <u>연초의 잎</u> 과 담배	<u>연초, 니코틴 및 대</u>
는 몰수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